

# 강남대학교학칙 개정 입안서

1. 규정 명칭 : 강남대학교학칙

2. 입안부서명 : 교무팀

3. 개정사유

- 본교의 제적 및 학사경고 제도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을 통해 타 대학 대비 본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업 수월성 제고를 위함
- 타 대학 사례 조사 및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사제도 운영
- 전과목과락에 따른 제적 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학업 부진 예방 효과는 적고, 오히려 제적자의 발생으로 학생들의 학업 중단 및 본교 중도탈락률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제적이 아닌 학사경고 부여를 통해 학업 부진 예방 효과를 부여한 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인재개발 관련 규정 사항의 정비
- 제적 기준 변경(완화) 및 학사경고 취소 제도 도입 등으로 제적유예제도 운영 종료
- 학사경고자에 대해 학사경고 부여로 종료가 아닌 학사경고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통해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학업 이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체계 강화 도모

4. 주요골자

- 제29조(제적) 4호 전과목낙제자 삭제, 학사경고 통산3회에서 연속3회로 변경
- 제29조(제적) 6호 미등록 기준 명확화 및 제적 기준 변경
- 제29조(제적) 9호 및 10호 삭제
- 제43조의2(학사경고) 학사경고 부여 기준을 세칙에 위임하고, 학사경고자 사후관리 제도의 선언, 학력부실 제적 기준 변경

5. 「강남 NEW VISION 2025(2019.2월)」의 24대 세부추진과제(발전지표)

규정 개정내용	강남 NEW VISION 2025 24대 세부실행과제	비고
제29조(제적) 제43조의2(학사경고)	2.2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관리 체계 고도화	

6. 강남대학교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강남대학교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lt;개정 2016.06.16, 2019.10.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li> <li>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li> <li>3.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li>4. <u>학력부실(전과목낙제, 학사경고3회) 또는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자</u></li> <li>5. 휴학자<u>중</u> 소정기간<u>내</u>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li> <li>6. 소정기간<u>내</u>에 등록을 <u>완료하지 아니한 자</u></li> <li>7. 타<u>교</u>에 입학한 자</li> <li>8. 제5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li> <li>9. <u>미래인재개발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아니한 자</u> &lt;신설 2013.01.02&gt;</li> <li>10. <u>제적 유예 승인 후 유예 조건을 미충족한 자</u> (제적 사유는 유예 전 제적 사유 적용)</li> </ol> <p>제43조의2(학사경고) ① 재학중 학업<u>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자</u>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p> <p>② 학사경고를 <u>총</u> 3회받은 경우에는 학력부실로 제적한다. &lt;개정 2010.12.23&gt;</p> <p>③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u>시행세칙으로 정한다.</u></p>	<p>제29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lt;개정 2016.06.16., 2019.10.23., <u>2022.00.00.</u>&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li> <li>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li> <li>3.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li>4. <u>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u></li> <li>5. 휴학자_중 소정기간 <u>내</u> 복학하지 아니한 자</li> <li>6. 소정기간<u>내</u>에 등록금을 <u>납부하지 아니한 자</u></li> <li>7. 타 <u>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u>에 입학한 자</li> <li>8. 제5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li> <li>9. &lt;삭제 2022.00.00.&gt;</li> <li>10. &lt;삭제 2022.00.00.&gt;</li> </ol> <p>제43조의2(학사경고) ① 재학_중 학업<u>수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u>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lt;개정 2022.00.00.&gt;</p> <p>② 학사경고를 <u>연속</u> 3회_받은 경우에는 학력부실로 제적한다. &lt;개정 2010.12.23., <u>2022.00.00.</u>&gt;</p> <p>③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 <u>및 학사경고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lt;개정 2022.00.00.&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19) 이 학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